

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-12호

「전파법」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9년 월 일
국립전파연구원장

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

1. 개정이유

제조자 등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,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·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업체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

2. 주요내용

가.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재배열(제3조)

- 업무 관계자 등이 적합성평가기준 및 기기부호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, 2, 3 및 7 일부를 별표1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열

나.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(제20조제1항)

-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 및 완구용 모터를 장착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

다.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(별표 1)

-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해당되는 23종의 무선기자재와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18종의 유선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

라. 일부 대상기자재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(별표 1)

- 자동차 기기류 및 기타 조명기구 2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

마.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분리 추가(별표 1 제7호 다목)

- 「단말장치 기술기준」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-15호) 제15조3 신설에 따라 기존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하여 추가

바.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관련 규제 완화(별표 5 제2호 라목 6))

- 모든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병행수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시 제품 표면에 부착할 적합성평가 표시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 표면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

3. 참고사항

-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(<http://rra.go.kr>) → 알림소식 → 법령정보 → 고시·공고 →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